의안번호	2214673
의 뢰 인	서영교의원
회 답 일	2026.1.27.
추계번호	25D6464
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제정안에 따라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67억 4,600만원(연평균 33억 4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	연평균
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시스템 구축	12,882	-	1,288	1,288	1,288	16,746	3,34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)	출생등록신청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아동이 체류하는 시·읍·면의 장에게 함	의무규정
2	안 제11조(출생등록신청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출생기록)	- 시·읍·면 장은 등록기간 내에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신청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등록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 (제2항) - 최고기간 내에 출생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등록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13조(출생등록부의 관리)	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4조(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등)	이 법에 따라 등록된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혈족은 출생등록부 기록사항에 관하여 시·읍·면의 장에게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	

5	안 제15조(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)	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	
6	안 제16조(출생등록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)	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조(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)	○	-
2	안 제11조(출생등록신청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)		
3	안 제13조(출생등록부의 관리)		
4	안 제14조(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등)		
5	안 제15조(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)		
6	안 제16조(출생등록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국내출생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신청업무는 기존 인력으로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건비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○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(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, 2018. 11.)에 따르면 국내출생 미등록 또는 불법체류 이주아동(만 18세 미만, 2017. 12. 말 기준)의 수는 최대 13,239명에서 최소 5,295명으로 추정됨

– 참고로,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내에서 출생하여 '출생신고 된' 외국인 아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출생신고 된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 현황: 2020.1.~2024.11.

(단위: 명)

	2020	2021	2022	2023	2024.11.
출생신고 외국인아동	268	268	268	262	220

자료: 대법원

○ 또한, 2023년 보건복지부 주관 '미등록 외국인아동 실태조사'에 따르면, 2015~2023년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보건복지부 주관 '미등록 외국인아동 실태조사' 결과

(단위: 명)

계	조사결과						
	출국	정상양육	수사의뢰		사망신고	조사대상 특정불가	기타
			소재확인 불가	베이비 박스 등			
5,183	2,563	2,249	244	20	49	49	9

자료: 대법원

○ 제정안은 출생등록사무처리와 출생증명서의 발급 및 교부 등의 권한을 시·읍·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[1], 관련 업무는 가족관계등록사무[2]의 예를 참고했을 때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

❑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출생등록사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·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, 대법원에서 제출한 시스템 개발 소요비용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추계함

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---

1) 「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」 (의안번호: 2214673) 제5조(권한의 위임) ①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・읍・면의 장(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, 읍・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・면장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위임한다.
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,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,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. 다만,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・면, 읍・면의 장 또는 읍・면의 사무소를 말한다.
③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・읍・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출생등록사무를 감독한다.

2) 현행 가족관계등록사무는 1,577개 시(구)·읍·면의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2,164개 주민센터에서 개인의 출생, 혼인, 사망신고 등의 기록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 등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고 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제정안에 따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[3]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○ **외국인아동출생등록시스템 구축비**

- 출생등록신청, 출생등록신청 확인·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등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비로 55억 7,004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○ **전자외국인아동출생등록시스템 구축비**

-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비로 8억 8,81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○ **전산장비 도입비**

-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가상화서버 및 DB서버 등 서버장비, 가상화디스크 및 이미지스토리지 등 저장 장치, OZ뷰어 등 리포팅툴 솔루션 등의 전산장비를 도입으로 64억 2,43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유지보수 비용은 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 후 2년째(2030년)부터 비용의 10%[4]가 소요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함

[표 4]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
외국인아동출생등록시스템 구축비	5,570	-	-	-	-	-
전자외국인아동출생등록시스템 구축비	888	-	-	-	-	-
전산장비 구입	6,424	-	-	-	-	-
유지보수비	-	-	1,288	1,288	1,288	-
합 계	12,882	-	1,288	1,288	1,288	16,746

주: HW 유지보수비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, 장비를 구입한 해(2028년)의 2년째인 2030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주: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자료: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3) 현재 대법원은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정보화기획심의관, 형사전자소송심의관, 정보화심의관 등의 기관을 두고 정보화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
4)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유지관리 요율 10~15%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, 『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』, 2024년, p178)

❑ 제정안에 따라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67억 4,600만원(연평균 33억 4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	연평균
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시스템 구축	12,882	-	1,288	1,288	1,288	16,746	3,34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